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 생 환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순자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,

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

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

서울시의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

누릴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내용은

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 제3조(책무)는
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,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
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
조성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
안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에서는 교육감은 5년마다
청소년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
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
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
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